

# 이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검토보고서

I. 제 출 자 : 이천시장

II. 제출일자 : 2004. 2. 11.(2004. 2. 12. 산업건설위원회 회부)

III. 근거법령 :

-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
-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
-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

IV. 검토내용

1. 제안이유

- 개정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(법률 제6653호), 과태료 부과·징수업무에관한규정(환경부예규 제232호) 개정 및 환경부의 1회용품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시행지침(폐정67511-949호)에 따라 변경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에 대한 지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함

2. 주요골자

- 가. 1회용품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대상행위와 포상금지급 대상행위를 구분하여 자판기의 1회용컵, 소형종이봉투 등에 대하여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
- 나. 신고방법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하되 포상금 지급행위 등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규정, 무분별한 신고행위를 억제하도록 함
- 다. 위반행위에 대한 다툼을 조기종결하기 위하여 신고기간을 위반행위 일로부터 7일이내에 하도록 함

- 라. 피신고자의 부담을 경감하여주기 위하여 주민신고에 의한 과태료부과는 위반회수에 불구하고 1차 과태료를 부과함
- 마.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1차 위반의 과태료만 부과하고, 포상금은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지급
- 바.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과태료를 소정의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50퍼센트를 감액함
- 사. 기타 신고 및 포상금의 지급시기, 방법·절차 등을 기술함

### 3. 검토의견

- 1회용품 사용규제 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부과·징수와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임조례로
- 제1조는 목적을 제2조는 과태료 부과기준과 제3조에 피처분자의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을 규정하였고
- 제4조의 과태료 처분통지와 제5조의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를 정하였으며
- 제6조는 과태료 수납부 비치·관리와 제7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규정하였고
- 제8조는 신고에 의해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사항과 제9조의 신고 포상금 제외대상을 정하였으며
- 제10조 내지 제13조는 신고자 신고방법과 신고서의 보완요청 및 신고서처리 등을 규정하였고
- 제14조의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·시기 등과 제15조의 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를 두었으며
- 제16조의 신고자의 보호와 제17조 신고포상금의 조달부담에 관한 사항과 제18조의 운용규정을 둔 조례안으로써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